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8

제출년월일 : 1999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행정조직개편에 의한 명칭의 변경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명칭변경

- 농촌진흥원→ 농업기술원
- 농촌진흥원장→ 농업기술원장
- 진흥원→ 기술원

○ 불합리한 사항 개선·보완

- “검정”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할수 없는 사안이므로 삭제
- 분석 및 검정→ 분석
- 농업기술, 작물, 원예, 축산→ 농작물(안 제2조 제1호·제3호)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근거법령 :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농림부령) 제2조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별표1, 별지제1호서식 내지 별지제3호서식중 “농촌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한다.

제1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1항, 별표1, 별표2,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중 “분석 및 검정”을 “분석”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농업기술, 작물, 원예, 축산”을 “농작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중 “진흥원장”을 “기술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중 “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 내지 별지제3호서식중 “검정”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1. (생략)

2. 분석 및 검정의뢰의 경우에는 의뢰 신청서를 제출할 때

② (생략)

제4조(신청기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 및 검정의 의뢰는 수시로 신청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시험등의 업무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 의뢰신청을 받은 진흥원장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① 진흥원장은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등을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기계·기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기구를 제공받은 진흥원장은 시험등이 끝난 즉시 기계·기구를 의뢰자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조(시험등의 거절) ① 시험등의 의뢰를 받은 진흥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험등을 거절할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분석.....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신청기간)

분석.....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시험등의 업무처리절차).....
........기술원장.....
.....
...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① 기술원장... 기술원.....
.....
.....
.....②
.....기술원장.....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시험등의 거절) ①.....
.....기술원장.....
.....

관련법규(부분 발췌)

○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농림부령)

[농림부령 제1,254호 1997. 3. 18전문개정]

[농림부령 제1,297호 1998. 12. 4전문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라함은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시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라 함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성능 및 안전성을 조사·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